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3 선고 2024나17174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3 선고 2024나1717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21 선고 2022가단535482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 지역주택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호, 이수민, 양유미, 최윤희, 조홍래, 김다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

피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재영

변론 종결2024. 11. 5.

판결 선고2024. 12. 3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21. 선고 2022가단535482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 판단 부분]

원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시 15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아, 계약금 지급시기는 피고 주장의 브릿지론 대출의 기표 발생 여부와 무관하고, 이 사건 계약은 대부중개가 아니다.

또한 갑 제9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위 총회에 앞서 배포된 책자에 제6호 안건으로 '기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 건'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명칭과 용역사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, 총회에서 원고 대표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및 계약금액과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표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,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송영환

판사김동현

판사이상아